

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2008. 5.
제출자 양주시장

□ 제안이유

“양주시자치법규 일제 정비 위원회”에서 불합리한 자치법 일제 조사에 의거 발췌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가. 화장실 등의 정의(안 제2조)

공중화장실 등의 정의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.

유료화장실에 “간이 화장실”을 추가 하고자 함

나.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(안 제3조제2항)

「관광진흥법」 제50조 및 제52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변경함

다. 간이화장실 설치 기준 마련(제14조)

이동식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이동화장실” 을 “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「관광진흥법」 제50조제1항 및 제3과의 규정과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의 “를 “「관광진흥법」 제50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“로 한다.

제4장 제목 “이동화장실 설치관리” 를 “이동·간이화장실 설치관리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이동·간이화장실의 설치)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또는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장실은 이동화장실의 설치가 어렵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.

제15조의제목 “(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)” 를 “(이동·간이화장실의 설치 관리)”하고, 제1항 내지 제3항에 “이동화장실”을 각각 “이동·간이화장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·과·소		기획감사담당관실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기획감사담당관 백 윤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의회법무담당 김 정식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 정식(820-2061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「 <u>관광진흥법</u> 」 제50조제1항 및 제3하의 규정과 「 <u>관광진흥법</u> 」 제52조제1항의	제2조(정의) ① 「 <u>관광진흥법</u> 」 제50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
제3조(적용의 범위) ② <생략>	제3조(적용의 범위) ② <생략>
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	제4장 이동·간이화장실 설치관리
제14조(이동화장실의 설치) ① <u>이동화장실의</u>	제14조(이동·간이화장실의 설치) ① <u>이동 또는 간이화장실의</u>
<제2항 신설>	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장실은 이동화장실의 설치가 어렵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.
제15조(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) ① <u>이동화장실의</u> ② <u>이동화장실의</u> ③ <u>이동화장실의</u>	제15조(이동·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) ① <u>이동·간이화장실의</u> ② <u>이동·간이화장실의</u> ③ <u>이동·간이화장실의</u>